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725호 2020. 5. 1.(금)

【규 칙】

제578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문 ····· 4

【공 고】

제2020-9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1호외 1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공고...15
제2020-941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8
제2020-956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제2020-973호 2020년 개인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36
제2020-978호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8
제2020-984호 도시계획시설(소로2-22호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43
제2020-987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6
제2020-9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풀향기숲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51
제2020-997호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53
제2020-10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58
제2020-10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 4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61
제2020-1013호 도시계획시설(신관동, 대로1-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70

제2020-1014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4
제2020-10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81
농업기술센터 2020-22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6

【고 시】

제2020-6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08
제2020-61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112
제2020-6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14
제2020-64호 도시계획시설(중로1-47호)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17
제2020-66호 2020년도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 ····· 119
제2020-69호 학봉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 ····· 122
제2020-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6, 3-49호외 3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24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67)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20. 4. 22.)에서 의결된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5월 1일

공주시 규칙 제578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3.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

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

공과금.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가격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제8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제3조제1호라목의 재무관”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의 본청 재무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를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로 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가격앙등”을 “가격상승”으로 한다.

⑦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사무전결처리 사항

공통사항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담당자		담 당 관 과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국 장 소 장	부시장	시장
		주무관	팀장				
예산집행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가. 국·직속기관·사업소 소관	기안			○		
	나. 담당관 소관	기안				○	
	3. 추정가격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함.	기안		○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공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 임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 괄 채 권 관 리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 담당관·과장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 담당관·과장	–	–
통 합 지 출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 출 원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팀장)	의정(사)업무담당(팀장)	지출업무담당(팀장)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입업무담당(팀장)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담당관·과 주무업무담당(팀장)	–	각 실·과 주무업무담당(팀장)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
회 계 책 임 관	–	–
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분 임 징 수 관	–	–
재 무 관	–	읍·면·동장
분 임 재 무 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총 괄 채 권 관 리 관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	–
부 채 관 리 관	–	–
총 괄 기 금 관 리 관	–	–
통 합 지 출 관	–	–
지 출 원	–	읍·면·동의 총무업무담당(팀장)
수 입 금 출 납 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팀장)	세무·재무업무담당(팀장)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팀장)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회계·재무·지출업무 및 서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휴양사업소, 읍·면·동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8. 기타 경비	전액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액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액	

공주시 공고 제2020-9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1호외 1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공주시 유구읍 일원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소로3-41호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업내역

종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면적 (필지/㎡)	사업내용	사업 기간	비고
도시계획 시설(도로) 사업	소로3-41호	유구읍 녹천리 122-24번지외 4필지	5 / 275	L=43m B=6m	인가일~ 48개월	
	소로3-54호	유구읍 유구리 648-32번지외 11필지	12 / 363	L=54m B=6m	인가일~ 48개월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도로과장)
- 시행자의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3. 공람기간 : 2020. 5. 1. ~ 5. 15. (14일간)

4. 공람장소 : 도시정책과 (☎ 041-840-8547),
유구읍행정복지센터 (☎ 041-840-2722)

5.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0. 5. 15.
- 제 출 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로3-4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유구읍 녹천리	122-24	전	455	52	주식회사진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설동2길 21	
2		122-18	장	189	189	주식회사진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설동2길 21	
3		122-13	도	88	1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122-14	전	13	13	박희돈	유구읍 석남리 242	
5		123-17	대	162	8	한명덕	유구리 614	

<소로3-5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유구읍 유구리	648-64	천	111	13	국토교통부		
2		648-62	천	103	14	국토교통부		
3		648-73	대	2	2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4		648-68	대	14	14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5		648-72	대	17	17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6		648-70	대	26	26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7		648-71	대	28	28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8		648-69	대	38	38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9		648-32	천	760	105	국토교통부		
10		648-28	천	60	6	국토교통부		
11		648-27	천	164	30	국토교통부		
12		429	천	46,074	70	국토교통부		

공주시 공고 제2020-941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5. 1.

공 주 시 장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 신청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에 따른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정대리인 신청, 선정 통지, 지정사건 명세 기록·관리(안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2020. 5. 1. ~ 2020. 5.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세무과(세정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 화 : 041-840-8333 / FAX : 041-840-231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세무과 세정팀 (☏ 041-840-833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18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 제4조제1항”을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8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9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공주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주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공주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공 주 시

공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공주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공주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공주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주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공주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공주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주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공주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공주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공주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관인생략

■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공주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 ⑤ (생 략)	제3조(서류의 송달) ①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공주시 세무과장(이하 “세무과장”이라한다)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7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신 설>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감사원법」제33조,「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⑦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

"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0-956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방화장실의 지정 규모를 완화한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의 지정 규모완화 조문의 단서조항 신설(안 제12조제1항)

-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이용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가능하도록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 5. 1. ~ 2020. 5. 21.(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수질관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530 / FAX : 041-840-2329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 041-840-8530)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9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 ---------- ---------- ---------- ---------- ---------- ---------- ----------.
<단서 신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20-973호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0년 종합소득(확정신고)·양도소득(확정신고·예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0. 5. 1.

공 주 시 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1) 납부기한 연장

대 상 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0. 8. 31.	2020. 8. 31.

2) 신고기한 연장

대 상 자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에 주소를 둔 자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제외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자로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 장 기 간	1개월	종합소득세의 연장기간과 동일
연장된 신고기한	2020. 6. 30.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기한 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 장 기 간	양도소득세의 연장기간과 동일
연장된 신고기한	양도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3. 종합소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주시 세무과(☏041-840-8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20-978호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함.

○ 청탁금지법 개정(2020. 5. 27. 시행)으로 행동강령 규칙 개정 필요함.

2.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사항 중 모든 외부강의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한정하고, 미리 신고규정에서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이내로 신고 시기 개정**(안 제22조 제2항)**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시기를 사후신고(10일 이내)로 개정함에 따라 신고사항 보완규정 등을 삭제**(안 제22조 제3항·제4항)**

○ 외부강의 등의 제한규정을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으로 구체화 개정**(안 제22조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감사담당관실(감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083 / FAX : 041-840-230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공무원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 ---------- <삭 제> <삭 제> ⑤ ---------- --- 그 공무원의 ----------. ⑥ ~ ⑧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20-984호

도시계획시설(소로2-22호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48-2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유구읍(소로2-22호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0. 5. 1.

공 주 시 장

1. 사업내역

종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면적 (필지/㎡)	사업내용	사업 기간	비고
도시계획 시설(도로) 사업	소로2-2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녹천리 48-21번지 외 12필지	13 / 1,221	L=149m B=8m	인가일~ 48개월	
	소로2-39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녹천리 122-24번지 외 10필지	11 / 1,155	L=139m B=8m	인가일~ 48개월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도로과장)
- 시행자의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3. 공람기간 : 2020. 5. 1. ~ 5. 15. (14일간)

4. 공람장소 : 도시정책과 (☎ 041-840-8547),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 041-840-2722)

5.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0. 05. 15.
- 제 출 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로2-2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92-19	임	3,418	32	신영배	공주시 신관동 386	
2		48-25	도	1	1	강신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685-401	
3		48-20	전	15	15	이용세	석남리 246	
4		48-24	도	2	2	이석희	석남리 294	
5		48-23	도	32	32	이석희	석남리 294	
6		682-2	구	2,559	324	국	농림축산식품부	
7		48-22	도	64	64	이석희	석남리 294	
8		50-10	답	67	67	장순오	녹천리 10-1	
9		48-21	도	171	171	이석희	석남리 294	
10		683	도	2,906	418	국	국토교통부	
11		49-2	도	130	8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2		49-5	도	15	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3		43-8	도	250	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계				9,630	1,221			

<소로2-3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680-13	천	27,818	103	국	국토교통부	
2		680-12	전	1,993	157	국	기획재정부	
3		117-25	답	75	75	조성희	녹천리 117	
4		687	도	1,534	25	국	국토교통부	
5		122-19	대	49	49	박희돈	녹천리 122-6	
6		122-22	도	17	17	박희돈	석남리 242	
7		122-24	전	455	395	주식회사 진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설동2길 21	
8		120-6	대	171	171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9		산92-28	임	11,851	78	신립 외 1인	경기도 광명시 광일로 61-1, 1층 101호(철산동)	
10		120-12	임	83	83	홍석원	녹천리 120-3	
11		120-5	전	1,022	2	박상용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07-2 근화아파트 에이-205	
계				45,068	1,155			

공주시 공고 제2020-987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8. 9. 환경부)」에 축산농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처리비용을 정하도록 함

○ 이 경우,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원가분석을 토대로 사육규모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 적용하고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함
- 허가대상 : 실제비용, 신고대상 : 최소 6,000원/톤 이상

○ 현행 처리수수료는 2000. 7. 15. 조례 제정 당시의 수수료로 그 간의 물가상승, 실제 공공처리시설운영 소요비용, 타 자치단체의 처리비 등을 감안, 관내 축산농가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 변경(제10조 제1항 별표2)

부과대상		부과기준(ℓ)	수집운반비(원)		처리비(원)			비고
			2021.1.1. 부터	2023.1.1. 부터	2021.1.1. 부터	2022.1.1. 부터	2023.1.1. 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1	7	8	6	8	10	
	신고대상	1	7	8	4	6	7	
	규제미만	1	7	8	1	1	1	

3. 입법예고 기간 : 2020. 5. 1. ~ 2020. 5. 21.(20일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5. 1. ~ 2020. 5. 2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 환경보호과)
- 연락처 : 041-840-8539 FAX : 041-840-2329

5. 기 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 041-840-853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29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10조 제1항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ℓ)	수집운반비(원)		처리비(원)			비고
			2021.1.1. 부터	2023.1.1. 부터	2021.1.1. 부터	2022.1.1. 부터	2023.1.1. 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1	7	8	6	8	10	
	신고대상	1	7	8	4	6	7	
	규제미만	1	7	8	1	1	1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10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ℓ)	수수료(원)			비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1	10	6	4	
	신고대상	1	9		3	
	규제미만	1	7		1	

<개정안>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10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ℓ)	수집운반비(원)		처리비(원)			비고
			2021.1.1. 부터	2023.1.1. 부터	2021.1.1 부터	2022.1.1. 부터	2023.1.1. 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1	7	8	6	8	10	
	신고대상	1	7	8	4	6	7	
	규제미만	1	7	8	1	1	1	

공주시 공고 제2020-9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풀향기숲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공주시 금흥동 66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부지내『공원 : 근린공원 / 풀향기숲공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금흥동 6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풀향기숲공원) 조성사업
- 명 칭 : 공주형 어린이 생태문화환경 놀이공간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공원)	63,047.7 (1필지)	■ 공원조성(근린공원:풀향기숲공원) - 조성면적(A) = 3,821㎡ ■ 세부내용 공람서류 참조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여성가족과장)
- 시행자의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20.12.31

6. 공람기간 : 2020. 5. 1. ~ 5. 15. (14일간)

7. 공람장소 : 도시정책과 (☎ 041-840-8547),
월송동행정복지센터 (☎ 041-840-8973)

8.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0. 5. 15.
- 제 출 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공주시 금흥동	667	공	63,047	63,047	공유지	공주시	

공주시 공고 제2020-997호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

공 주 시 장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공주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설립목적,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설립,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함.
- 재단의 사업범위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운영 및 관리,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정함.

○ **공주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함.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기부금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공주문화재단의 공유재산 대부,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파견, 지도.감독,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2조)**

- 공무원 파견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을 규정함.
- 시장이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의 준용규정을 명시함.

3. 입법예고기간 : 2020. 5. 1. ~ 2020. 5. 21.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문화체육과(문화정책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324 / FAX : 041-840-3708

5.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 041-840-8324)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공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법인격)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공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기부금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재단 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공고 제2020-10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 공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녹천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2단계)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58-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녹천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2단계)개설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1,279 (11필지)	■ 도로개설(소로2-14호) - 연장(L) = 109.0m, 폭원(B) = 8.0m ■ 도로개설(소로2-21호) - 연장(L) = 64.0m, 폭원(B) = 8.0m ■ 세부내용 공람서류 참조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도로과장)
- 시행자의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21.12.31

6. 공람기간 : 2020. 5. 1. ~ 5. 15. (14일간)

7. 공람장소 : 도시정책과 (☎ 041-840-8547), 도로과 (☎ 041-840-8553)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 041-840-2722)

8.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0. 5. 15.
- 제 출 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로2-14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유구읍 녹천리	58-45	대	42	42	공주시	-	
2		58-44	대	16	16	공주시	-	
3		58-43	전	92	92	공주시	-	
4		58-41	전	298	298	공주시	-	
5		56-2	전	62	62	공주시	-	
6		54-6	전	467	467	공주시	-	
7		53-12	대	27	27	공주시	-	
합계				1,004	1,004			

<소로2-21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유구읍 녹천리	26-40	대	3	3	공주시	-	
2		53-10	전	140	140	공주시	-	
3		26-37	대	11	11	공주시	-	
4		26-38	전	121	121	최봉순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6-3	
합계				275	275			

공주시 공고 제2020-10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외 4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 공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유구읍 중앙길(중로 3-1, 소로 4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유구읍 중앙길(중로 3-1, 소로 4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로3-1호 - 61필지, 8,168㎡ ■ 소로2-20호 - 10필지, 733㎡ ■ 소로2-29호 - 22필지, 2,324㎡ ■ 소로3-32호 - 23필지, 2,097㎡ ■ 소로2-34호 - 20필지, 2,388㎡	■ 도로개설(중로3-1호) - 연장(L) = 684.0m, 폭원(B) = 12.0m ■ 도로개설(소로2-20호) - 연장(L) = 89.0m, 폭원(B) = 8.0m ■ 도로개설(소로2-29호) - 연장(L) = 277.0m, 폭원(B) = 8.0m ■ 도로개설(소로3-32호) - 연장(L) = 327.0m, 폭원(B) = 6.0m ■ 도로개설(소로2-34호) - 연장(L) = 283.0m, 폭원(B) = 8.0m ■ 세부내용 공람서류 참조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도로과장)
- 시행자의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23. 12. 31

6. 공람기간 : 2020. 5. 01 . ~ 5. 15. (14일간)

7. 공람장소 : 도시정책과 (☎ 041-840-8547), 도로과 (☎ 041-840-8553)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 041-840-2722)

8.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0. 5. 15 .
- 제 출 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중로3-1호>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번 분할후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유구읍 백교리	113	113-1	답	414	12	국토 교통부	국	
2		113	113-4	답	351	351	박상흥	충남천안시서북구 충무로158-10 106동301호	
3		111	111-2	답	69	69	김기웅	석남리 274-6	
4		129-1	129-2	답	756	756	최준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90-46	
5		130-4	130-5	답	534	534	장석순	녹천리 203	
6		571	571-5	구	1,732	336	농림축산 식품부	국	
7		149-3	149-5	답	92	92	박송자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길 52-1	
8		148-4	148-11	답	250	250	김보경	충남공주시번영1로194-7 106동902호	
9		148-6	148-13	답	281	281	이병선	만천리 360-13	
10		148-3	148-9	답	57	57	윤석군	녹천리 149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번 분할후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1	유구읍 백교리	147-1	147-4	답	242	242	하수영	전북전주시완산구소태정로1,404동1104호 (효자동2가,휴먼시아아이린)	
12		147-1	147-6	답	3	3	이숭자 외 1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진버들1길 73,나동305호	
13		146-2	146-5	대	11	11	명환길	유구읍 중앙1길 31-36	
14		146-3	146-6	답	234	234	명환길	유구읍 중앙1길 31-36	
15		146-4	146-7	답	1	1	김은진 외 4인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509,107동702호 (어양동,익산자이아파트)	
16		567	567	도	3,172	207	국토 교통부	국	
17		142-2	142-3	답	121	121	최기순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광천로 430번길41-154	
18		142-4	142-11	답	377	184	문치호	유구읍 백교리 142	
19		142-1	142-9	답	109	109	김형태 외 1인	대전광역시서구복수동576 초록마을5단지502동106호	
20		141-6	141-13	대	112	112	정영라	충남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31-16	
21		141-7	141-14	도	24	24	권태문	유구읍 석남리 산21	
22		141-10	141-15	답	7	7	전옥순	유구읍 백교리 141-10	
23		141-2		도	116	41	국토 교통부	국	
24		115-1	115-4	답	742	12	국토 교통부	국	
25		115-1	115-7	답	107	107	이춘희 외3인	유구읍 백교리 320	
26		119	119-1	답	404	404	이춘희 외3인	유구읍 백교리 320	
27		133-2	133-7	학	11	11	장석순	유구읍 녹천리 500	
28		133	133-3	학	3	3	충청남도	교육감	
29		147-5	147-7	답	3	3	정종원외 1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원로385 103동1101호	
30		140-2	140-14	대	9	9	순복음 유구교회	유구읍 백교리 140-10	
31		140-5	140-11	답	14	14	순복음 유구교회	유구읍 백교리 140-10	
32		140-5	140-17	종	1	1	순복음 유구교회	유구읍 백교리 140-10	
33		140-10	140-19	답	18	18	순복음 유구교회	유구읍 백교리 140-10	
34		140-3	140-15	답	44	44	순복음 유구교회	유구읍 백교리 140-10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번 분할후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35	유구읍 백교리	140-9	140-18	답	44	44	순복음 유구교회	유구읍 백교리 140-10	
36		15-2	15-2	도	112	28	기획 재정부	국	
37		15-3	15-3	도	54	19	국토 교통부	국	
38		15	15-4	답	134	113	공주시	공	
39		14-1	14-4	답	1	1	기획 재정부	국	
40		14	14-5	답	161	151	공주시	공	
41		14-3	14-6	대	44	44	공주시	공	
42		13-6	13-11	대	97	97	공주시	공	
43		12-4	12-7	답	232	212	공주시	공	
44		12-3	12-6	답	172	171	공주시	공	
45		11-2	11-4	답	27	27	공주시	공	
46		11-1	11-3	답	302	294	공주시	공	
47		568	568	구	1,319	56	농림축산식 품부	국	
48		10-4	10-8	답	133	126	공주시	공	
49		18	18-4	임	108	87	공주시	공	
50		18	18-1	도	1,287	32	공주시	공	
51		10-6	10-11	답	4	4	윤은중	유구읍 석남리 240	
52		18-3	18-6	임	779	779	장진분	유구읍 백교리 34	
53		9-4	9-7	답	22	8	박영준 외 5인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22 11동302호	
54	유구읍 석남리	440-36	440-40	구	3,715	125	농림축산식 품부	국	
55		326-9	326-14	답	341	341	주병호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 176-7	
56		328-5	328-10	답	495	495	김성환	유구읍 석남리 281-3	
57		326-6	326-18	답	40	40	김용갑	유구읍 석남외마루길 6	
58		334	334-3	답	172	172	이영숙	유구읍 마을안길 24, 가동 201호	
59		333	333-2	답	40	40	안홍석	유구읍 백교리 42	
60		330	330-2	답	1	1	박성만	유구읍 백교리 34	
61		328-8	328-12	종	1	1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대전노회유지 재단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3-23**	
합 계					20,258	8,168			

<소로2-20호>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번 분할후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유구읍 백교리	2-1	2-13	도	17	17	김민경 외 11인	인천광역시서구에메랄드로156 207동304호	
2		2-4	2-14	대	2	2	박화자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31-8	
3		2-3	2-10	대	146	146	공주시	공	
4		2-7	2-12	대	80	80	공주시	공	
5		2-5	2-15	대	21	21	조용춘	유구읍 백교리 2-5	
6		141-3	141-11	답	57	57	이우원	유구읍 중앙1길21 비동 101호	
7		142-1	142-6	답	385	184	김형태 외 1인	대전시 서구 복수동 576 초록마을 5단지 502동 106호	
8		142	142-5	답	24	24	문치호	유구읍 백교리 142	
9		142-4	142-11	답	377	194	문치호	유구읍 백교리 142	
10		142-2	142-10	답	8	8	최기순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430번길 41-154	
합 계					1,117	733			

<소로2-29호>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번 분할후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유구읍 백교리	73-2	73-6	천	1,384	6	국토 교통부	국	
2		69-5	69-11	전	322	38	국토 교통부	국	
3		69-12	69-17	전	17	17	남상목	유구읍백교리66-3 한남연립 비동 307호	
4		69-5	69-5	전	609	609	이태순외1인	대전 중구 산성동 303-34	
5		66-10	66-14	도	113	84	공주시	공	
6		66-12	66-13	답	85	85	공주시	공	
7		66-7	24289	도	107	8	공주시	공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번 분할후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8	유구읍 백교리	66-3	66-8	도	503	329	공주시	공	
9		137-21	137-38	대	11	11	오영진	유구읍 백교리 60	
10		137-14	137-37	답	193	193	이기호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18번길 62 104동 603호	
11		137-10	137-36	답	82	82	정희숙	유구읍 유구리 625	
12		137-9	137-35	답	168	168	지순자	유구읍 중앙1길 17 비동 101호	
13		133	133-5	학	214	214	충청남도	공	
14		568	568	구	1,319	44	농림축산식품부	국	
15		140-4	140-16	답	6	6	김기성외1인	유구읍 백교리 35	
16		572	572-5	도	57	37	국토교통부	국	
17		135-2	135-8	대	42	42	김종순	공주시 우금티로704, 101동 401호	
18		133	133-4	학	157	157	충청남도	공	
19		135	135-6	답	68	68	김종순	공주시 우금티로704, 101동 401호	
20		571	571-5	구	1,732	41	농림축산식품부	국	
21		147-5	147-8	답	44	44	정종원외1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6 103동1101호	
22		146-3	146-6	답	234	41	명환길	유구읍 중앙1길 31-36	
합 계					7,467	2,324			

<소로3-32호>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번 분할후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유구읍 백교리	142-1	142-6	답	385	199	김형태 외 1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576 초록마을 5단지 502-106호	
2		2-3	2-8	대	118	118	공주시	공	
3		2-2	2-6	도	46	46	박순옥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95 103동1401호	
4		143	143-1	답	9	9	남미숙 외 3인	천안시 서북구 불당1길 14 103동102호	
5		1-5	1-12	대	155	154	이지복 외 1인	유구읍 백교리 1-5	
6		144-3	144-5	대	88	88	남상범	유구읍 중앙1길 49-13	
7		1-3	1-3	도	241	27	충청남도	공	
8		567	567	도	3,172	70	국토 교통부	국	
9		144-1	144-4	대	3	3	강태두	유구읍 백교리 10	
10	유구읍 석남리	270-1	270-10	임	209	209	국제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11		270-1	270-9	임	2,977	18	국제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12		358	358-4	대	13	13	서승근	충남아산시남산로126 103동801호	
13		357-3	357-11	대	200	200	이영욱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211, 1014동1701호	
14		357-1	357-10	대	27	27	임관수	유구읍 중앙1길 59	
15		357-7	357-12	대	1	1	남기룡	유구읍 석남리 357-4	
16		270-1	270-7	임	1,063	829	국제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17		270-2	270-16	임	22	22	심명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42 101동207호	
18		269-20	269-29	임	6	6	서장우 외 1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2 관악드림타운126-1304	
19		269-19	269-28	대	3	3	김기태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69	
20		269-18	269-27	임	3	3	김용욱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48번길 11-17,2층	
21		269-16	269-26	임	19	19	홍인규	유구읍 석남리 382	
22		269-15	269-25	대	19	19	장승호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51, 111동301호	
23		270-1	270-6	임	4,268	14	국제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합 계					13,047	2,097			

<소로2-34호>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번 분할후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유구읍 석남리	300-1		도	1,458	3	충청남도	공	
2		351-2	351-5	답	173	173	안형규	유구읍 백교리 25	
3		353	353-4	답	23	23	이미희 외 1인	유구읍 유구마곡사로18	
4		353-2	353-6	답	198	198	이미희 외 1인	유구읍 유구마곡사로18	
5		440-36	440-40	구	3,715	658	농림축산 식품부	국	
6		352	352-1	답	21	21	이지복 외 2인	유구읍 백교리 1-5	
7		441	441-4	도	2,804	3	국토 교통부	국	
8		444		구	334	7	농림축산 식품부	국	
9		343	343-1	답	227	227	이지복 외 2인	유구읍 백교리 1-5	
10		344	344-1	답	56	56	김기순	유구읍 문화동길 25	
11		341-2	341-5	답	889	889	염진호 외 3인	평택시 비전동 820 평택윤중수진 제가아파트101동1102호	
12		335-3	335-5	답	59	59	조태호 외 5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24 구로우성아파트1동402호	
13		442-2	442-56	도	294	14	국토 교통부	국	
14		326-7	326-8	답	1	1	최기원	유구읍 석남리 224	
15		326-7	326-19	대	6	6	최기원 외 1인	유구읍 석남리 355-9	
16	유구읍 백교리	9-4	9-7	답	22	14	박영준 외 5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 11동302호 (신대방동우성아파트)	
17	유구읍 석남리	289-1		도	817	1	충청남도	공	
18		353	353-3	답	1	1	이미희 외 1인	유구읍 유구마곡사로18	
19		339-2	339-9	답	14	14	오영희	유구읍 중앙2길 62	
20		339-4	339-10	답	20	20	오영희	유구읍 중앙2길 62	
합 계					11,132	2,388			

공주시 공고 제2020-1013호

도시계획시설(신관동, 대로1-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 공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신관동(대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업내역

종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면적 (필지/㎡)	사업내용	사업 기간	비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대로1-2호	신관동 산2 번지외 43필지	44 / 23,247	L=590m B=34~35m	인가일~ '23.12.31.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도로과장)
- 시행자의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3. 공람기간 : 2020. 05. 01. ~ 05. 15. (14일간)

4. 공람장소 : 도시정책과 (☎ 041-840-8547),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 041-840-2722)

5.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0. 5. 15 .
- 제 출 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44 필지				98,145.8	23,247							
1	금흥동	621	도	29,968.4	66	공	공주시					
2	금흥동	624	도	6,772.3	33	공	공주시					
3	금흥동	272-3	도	200.0	200	서경모	공주시 반죽동 158					
4	금흥동	산30-34	임	2,399.0	2,399	서경모	공주시장기로10-21(금흥동)					
5	금흥동	산30-6	임	99.0	99	서은성	산30-3					
6	금흥동	271-10	임	667.0	667	김욱동	대전 중구 목동 132-2 현대아파트 104-803					
7	금흥동	산38-25	임	1,406.0	1,406	오병항	교동 3-32 한진아파트 1동501호					
8	금흥동	산38-28	임	19.0	19	오병항	신관동 615 현대아파트 102-501					
9	금흥동	산38-22	임	29.0	29	오병항	신관동 615 현대아파트 102-501					
10	금흥동	산38-7	임	812.0	87	이연자	중동 239-1	1/4				
						박미임	대전유성구온천로60,2206호 (봉명동,사이언스타운)	1/8				
						최석환	대전유성구온천로60,2206호 (봉명동,사이언스타운)	1/8				
						오재헌	중학동 9-15	1/4				
						오재열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442-2	1/4				
11	금흥동	산38-26	임	1,278.0	1,278	이연자	중동 239-1	1/4				
						박미임	대전유성구온천로60,2206호 (봉명동,사이언스타운)	1/8				
						최석환	대전유성구온천로60,2206호 (봉명동,사이언스타운)	1/8				
						오재헌	중학동 9-15	1/4				
						오재열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442-2	1/4				
12	금흥동	산36-7	임	250.0	250	전주이씨덕천군후손중산파문중회	금흥동 80					
13	금흥동	산38-27	임	1,842.0	1,842	이연자	중동 239-1	1/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박미임	대전유성구온천로60,2206호 (봉명동,사이언스타운)	1/8				
						최석환	대전유성구온천로60,2206호 (봉명동,사이언스타운)	1/8				
						오재헌	중학동 9-15	1/4				
						오재열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442-2	1/4				
14	금흥동	268-1	답	96.0	96	방재봉	공주시 신관동 375-10					
15	금흥동	267-14	답	676.0	676	박제근	공주시 산성동 147					
16	금흥동	267-13	답	598.0	598	장영국	대전서구대덕대로415,107동 606호(만년동,상아아파트)	1/2				
						임영미	대전서구대덕대로415,107동 606호(만년동,상아아파트)	1/2				
17	금흥동	267-12	답	594.0	594	오재일	청양군 목면 대평리 25					
18	금흥동	267-10	답	570.0	570	김지호	산성동 174-13					
19	금흥동	676	도	9,832.7	1,440	공	공주시					
20	금흥동	269-12	전	37.0	37	배혜경	옥룡동 81-2					
21	금흥동	269-13	전	8.0	8	배혜경	옥룡동 81-2					
22	금흥동	267-11	답	772.0	772	강경철	**신관동 26**					
23	금흥동	267-16	답	273.0	273	윤여은	공주시 한적2길 51-14,102동 404호(금흥동,우남퍼스트빌)					
24	금흥동	563-6	구	820.0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신관동	676	도	17,061.4	30	공	공주시					
26	신관동	281-12	도	4,497.0	128	공	공주시					
27	신관동	291-2	전	1,084.0	63	경주이씨국당 공파한적문중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406					
28	신관동	288-3	답	487.0	289	공	공주시					
29	신관동	288	답	747.0	747	이미선	경기도오산시운암로89,211동 1901호(오산동,주공아파트)	1/4	가수원 농업협 동조합	대전 서구 가수원동 423	근저당권 지상권	
						이장섭	대전서구정림로55,106동1005호(정림동,우성아파트)	1/4				
						이미경	**청주시상당구낙가산로21 번길4-28,6호(용암동)**	1/4				
						이관섭	천안시서북구쌍용16길41,401동 404호(쌍용동,일성다래아파트)	1/4				
30	신관동	288-7	답	262.0	262	공	공주시					
31	신관동	291-11	전	557.0	557	경주이씨국당 공파한적문중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406					
32	신관동	291-8	전	86.0	86	공	공주시					
33	신관동	291-5	전	213.0	96	공	공주시					
34	신관동	산2	임	7,706.0	5,282	경주이씨국당 공파한적문중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406					
35	신관동	280-17	임	2,274.0	732	공	공주시					
36	신관동	280-20	임	189.0	20	공	공주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37	신관동	280-18	임	9.0	9	임재우	신관동1 새뜸현대아파트 304-1206					
38	신관동	1-6	임	1,354.0	318	공	공주시					
39	신관동	1-7	임	592.0	425	공	공주시					
40	신관동	1-10	임	52.0	5	공	공주시					
41	신관동	1-8	임	29.0	29	**김욱동**	대전시 중구 목동 132-2 현대아파트 104-803호					
42	신관동	1-9	임	26.0	26	오병항	**공주시 신관동 615 현대아파트 102동 501호**					
43	신관동	1-47	임	9.0	9	오병항	**공주시 신관동 615 현대아파트 102동 501호**					
44	신관동	1-15	임	893.0	613	공	공주시					

공주시 공고 제2020-1014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주시“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 및 부조리 신고기한을 정비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에 다음 사항을 추가(안 제2조)**

-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임직원

○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안 제3조)**

- 신고기한 2년을「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만료일(3년)로 하고,
- 신고 활성화 및 중대 비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까지로 신고기한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감사담당관실(감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086 / FAX : 041-840-230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임직원

라.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 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하였거나 출자한 공기업 및 자원봉사센터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임직원 라.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신고의 방법) ① 제2조제4호 각 목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공무원 등과 일반시민은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방법) ① ---------- ---------- ---------- ----------. ---------- ---------- 시장----------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20-10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 공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웅진동(공주경찰서 앞, 중로2개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웅진동(공주경찰서 앞, 중로2개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15,548 (50필지)	■ 도로개설(중로1-12호) - 연장(L) = 138.0m, 폭원(B) = 20.0m ■ 도로개설(중로2-13호) - 연장(L) = 513.0m, 폭원(B) = 15.0m ■ 세부내용 공람서류 참조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도로과장)
- 시행자의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24.12.31

6. 공람기간 : 2020. 05. 01. ~ 05. 14. (14일간)

7. 공람장소 : 도시정책과 (☎ 041-840-8547), 도로과 (☎ 041-840-8553)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 041-840-2860)

8.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0. 05. 30.
- 제 출 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중로1-12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시	동					성 명	주 소	
1	공주	웅진	664-23	임	3,001	409	공주시		
2			산33-6	임	5,168	2,604	송용자	익산시 신동 765-23 제일아파트 101-401	
							김창경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59	
							배평황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35-3	
							강재식	대전 중구 중촌동 395-20	
							강재식	대전 중구 중촌동 395-20	
							황정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 114동 501호(석수동, 석수 이편한세상 아파트)	
							박광환	대전 서구 월평동 311 하나로 아파트 102-707호	
3			669-5	전	1,471	83	임규식	대전시 서구 삼천동 1156	
4			669-6	전	298	237	임규식	대전 서구 가장동 39-31	
5			668	대	139	2	유순자	공주시 웅진동 668	
6			666-1	대	367	33	정영덕	공주시 웅진동 637	
7			667-2	대	48	48	이무성	공주시 웅진동 637	
8			666-2	대	328	317	이무성	공주시 웅진동 637	
9			765	도	1,077	53	국토교통부		
10			639-2	답	318	96	박동명	대전광역시 서구 사마6길 69 (도마동)	
							배숙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마6길 69 (도마동)	
11			638-5	전	2,212	342	배숙자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 33, 502동 302호(반석동, 반석마을5단지아파트)	
							박동명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 33, 502동302호(반석동, 반석마을5단지아파트)	
합 계						4,224			

<중로2-13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시	동					성 명	주 소	
1	공주	웅진	639-2	답	318	196	박동명	대전시 서구 사마6길 69 (도마동)	
							배숙자	대전시 서구 사마6길 69 (도마동)	
2			666-2	대	328	2	이무성	공주읍 웅진동 637	
3			765	도	1,077	9	국토교통부		
4			638-5	전	2,212	213	배숙자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 33, 502동302호(반석동, 반석마을5단지아파트)	
							박동명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 33, 502동302호(반석동, 반석마을5단지아파트)	
5			640-13	전	591	2	박동명	대전시 서구 사마6길69 (도마동)	
							배숙자	대전시 서구 사마6길69 (도마동)	
6			640-10	대	1,700	61	박동명	대전시 서구 사마6길69 (도마동)	
							배숙자	대전시 서구 사마6길69 (도마동)	
7			639	장	1,988	886	박동명	대전시 서구 사마6길69 (도마동)	
							배숙자	대전시 서구 사마6길69 (도마동)	
8			739	구	45,806	1,143	농림축산식품부		
9			651	답	1,663	653	이윤진	충남 공주시 버드나무1길51, 1동702호(옥룡동,금강아파트)	
10			652	답	1,998	1,246	이윤진	충남 공주시 버드나무1길51, 1동702호(옥룡동,금강아파트)	
11			652-2	답	862	37	김진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8,211동301호 (전민동,엑스포아파트)	
12			652-3	답	670	670	최병옥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215	
13			650	답	2,460	420	이윤진	충남 공주시 버드나무1길51, 1동702호 (옥룡동,금강아파트)	
14			652-1	답	179	179	안창용	대전 서구 둔산북로 160,8동 1002호 (둔산동,한마루아파트)	
15			653-7	답	285	285	안창용	대전 서구 둔산북로 160, 8동1002호 (둔산동,한마루아파트)	

<중로2-13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시	동					성 명	주 소	
16	공주	웅진	756-1	도	88	88	국토교통부		
17			610-3	대	48	48	안창용	대전 서구 둔산북로 160,8동 1002호 (둔산동,한마루아파트)	
18			645	전	2,185	30	오재복	공주시 우성면 구레말길 34-4	
19			610-36	임	1,614	384	박옥순	부산 수영구 민락동 108-1 부산민락푸르지오106-1602	
20			610-34	임	1,271	533	안창용	대전 서구 둔산북로 160, 8동1002호(둔산동,한마루아파트)	
21			755-1	도	249	16	국토교통부		
22			236	답	2,727	55	김영철	공주시 금흥동 602 우남 퍼스트빌101-1101	
							박옥순	공주시 금흥동 602 우남 퍼스트빌101-1101	
23			235	답	1,993	123	권경희	공주시 교통 234	
24			237-2	답	2,717	1,149	윤경애	공주시 공주대학로 49-5, 102동 1502호(신관동, 대동다숲아파트)	
25			237-1	답	2,103	552	이무성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202-2	
							이화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202-2	
26			237-3	답	833	727	조금자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1-6	
27			241	전	248	59	조동열	공주시 교동 3-18	
28			754	도	33	33	국토교통부		
29			754-1	도	202	20	국토교통부		
30			산32-14	임	1,425	273	윤원근	천안시 성정동 696-1 경성 훼밀리아파트302호	
							김주영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279-1풍진아파트1-502	
31			산32-12	임	480	480	노병렬	공주시 금성동 55-39	
32			244-1	대	365	63	김익환	공주시 웅진동 279	
33			737-10	도	236	89	국토교통부		
34			257	대	238	172	박제은	공주시 웅진동 257	
35			737-9	도	1,348	34	국토교통부		
36			256-5	답	90	57	공주시		
37			256-8	답	56	21	공주시		
38			256-10	답	1,182	11	공주시		
39			256-9	답	1,882	305	공주시		
합 계						11,324			

공주시 공고 제2020 -22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우리시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관련된 유사조례를 통합(①+②), 일원화
①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② 공주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주 푸드의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공급식의 효율적 지원과 공주 푸드의 안정적인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 **먹거리 관련 통합조례를 위한'제명'개정**
- 제명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주푸드지원심의회'신설, 먹거리관련 심의기구통합 일원화 (안 제4조)**
- 먹거리 시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심의기구 통합, 간소화
- 학부모.영양(교)사.생산자.소비자.시민 및 전문가 구성 인원최소화(25명이내)

○ **공주푸드 선순환체계 구축 기반을 위한 내용 추가 및 조정(안 제14조)**

- 공주푸드 생산·가공·유통·인증 등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 추가

○ **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조직+물류기능) 운영기준 및 용어 정비(안 제33조)**

-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기준 (당초)재단설립 → 위탁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지역 푸드플랜 가이드라인'참조, 용어 정비 및 단순화

<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공주시 로컬푸드 → 공주푸드>

3. 입법예고 기간 : 2020. 5. 1. ~ 2020. 5. 21.(20일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5. 1. ~ 2020. 5. 2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공주시청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41-840-8709, FAX : 041-840-3761

5. 기 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농업정책과 지역식품순환팀 (☏ 041-840-870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32528)

└ FAX : 041-840-376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공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나아가 민·관 협치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공주푸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지역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축산물 및 유기식품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시 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6.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란 시 지역에서 생산한 공주푸드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공공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공주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시 지역 농산물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식생활 지도사 양성

6. 공주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7. 공주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및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8.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주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공주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9.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방안 마련

10.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시설 등 과 네트워크 지원

제2장 공주푸드 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주푸드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주푸드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2.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식생활 및 영양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주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공급식업무 부서장과 공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과장 및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대표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공주시 학부모협의회 및 학교 영양사·영양교사회 대표
3. 공주시 농업인 단체, 지역농산물 생산자 단체, 소비자·시민사회 단체 대표
4. 공주시 학교·공공·복지급식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6. 그 밖에 공공급식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공급가격 결정 등 사업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위원회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제1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주푸드 생산) ① 공주푸드 농산물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조직화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고령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푸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업인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부체계 구축 등 조직화
2. 지역순환농업 정착 및 촉진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3. 학교 등 공공급식의 맞춤형 식품생산
4.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5. 꾸러미 마을,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 영농법인의 직거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공주푸드 가공) ①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공주푸드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농촌융복합사업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주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육성·지원 할 수 있다.

③ 공주푸드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권역별 농업인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주푸드 소비·유통) ① 시장은 공주푸드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공주푸드 유통·소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주푸드 식품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공주푸드 이용촉진을 위하여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주푸드의 인증) ① 시장은 공주푸드의 안정성 보장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공주푸드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절차 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급식 지원

제19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20조(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2. 공주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주푸드의 공급 확대

4.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5. 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선진 국내·외 사례 공동벤치마킹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도마다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공급식의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지역 외의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의 노력) ① 시장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학교급식 지원

제23조(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24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공주푸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의 지원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5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26조(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급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학교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28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라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 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학교급식의 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학교급식의 급식재료를 제26조에 따른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지역 외의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로 제26조에 따른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신청) 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23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3.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4. 공주푸드를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지원결정) 제29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31조(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 ①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사용내역을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무상급식의 지원 노력)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3조(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공주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공주시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2. 우수농산물의 기획 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3.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콜드체인(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저온을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

7. 지역의 중·소농의 생산·가공 기반시설 구축 지원 및 판로 확대

8.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 및 관계 소비시장 확대에 관한 업무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 및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 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면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주푸드 지원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기간 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온전하게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주시 먹거리 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 먹거리 사업단은 이 조례에 따라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기 까지 존속한다.

공주시 고시 제2020-6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도로명주소법」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1.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전의로 271-10 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04.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산 86-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271-10	20200416	신규	2009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반영	고시후공문발송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성리 198-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819-17	20200416	신규	20100112	냇물이 구불구불 흐른다 하여 구부내라 불렸던 명칭을 활용	
3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310-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64 (반죽동)	20200416	신규	20100202	행정구역 명칭 반영	
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0-12, 600-1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유구마곡사로 738-7	20200416	신규	20100112	유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로 부여	
5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418-13, 산 26-1, 407, 418-4, 418-5, 418-7, 418-8, 418-10, 540-3, 542-33, 59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로 114-10 (금흥동)	20200416	신규	2010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513-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연종길 636	20200416	신규	20100112	구계리와 연종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28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안길 46-45	20200416	신규	20100112	내문리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내문안길로 부여	
8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355-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돌모루2길 17-12	20200416	신규	20100112	바위가 있는 모롱이에 마을이 있어서 큰돌이 있는 모롱이란 뜻에서 돌모루2길로 부여	
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밀목재길 27-18	20200416	신규	20100112	민목재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143-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38	20200416	신규	20100202	반포초등학교를 지나는 길이라 하여 반포초교길로 부여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56-3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밤고개길 84	20200416	신규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52-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산2길 3 (봉황동)	20200416	신규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63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부탕골길 50	20200416	신규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51-1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산수골길 33	20200416	신규	20100202	산소가 많은 골짜기라 하여 산수골길로 부여	
15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89	충청남도 공주시 수원골2길 8 (옥룡동)	20200416	신규	2010020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1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101-1, 101-2, 101-5, 102-6, 102-7, 573-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178	20200416	신규	20100202	도로의 끝지점에 연수원이 있고 마을주민 모두가 연수원을 가는길이라 인식, 연수원길로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353-3	충청남도 공주시 왕촌길 192 (상왕동)	20200416	신규	20100112	왕촌이라 불리던 하천을 타고 가는 길이라 왕촌길이라 부여	
1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542-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동2길 13	20200416	신규	20100112	가을때문에 부촌이 된 마을이고 풍류도 있고 해서 추동이라 불렀다 하며, 일련번호 부여방식과 혼합 활용 추동1길로 부여	
1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68-4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길 163-20	20200416	누락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활용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2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68-3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평목길 163-24	20200416	누락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활용	고시 후 공문 발송 예정
2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 14-81, 산13-5, 17-2, 18, 30-1, 32, 34, 35, 35-1, 35-2, 35-3, 36, 36-1, 36-2, 543-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182	20200416	신규	20190415	복합연수단지 조성으로 신규 도로가 생성됨에 따른 도로명 부여	

공주시 고시 제2020-61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1.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시장5길 34-20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04.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170-20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170-20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시장5길 34-24, 34-18, 34-16, 34-20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시장5길 34-20	3.31	건물번호합병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 2-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426-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남월길 17-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남월길 17-8	3.3	관련지번변경	
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169-8, 169-1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169-8, 169-1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124-2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124-20	4.15	건물번호합병	

공주시 고시 제2020-6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시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1.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883-21 외 17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4.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254-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883-21	2020	허가과17839-(2020.3.29.)호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거 건물번호 폐지
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15-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들목팽나무길 19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6-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산막골길 120-29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99-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산막골길 28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9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산막골길 76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22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길 8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540-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길 511-7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16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차동로 465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9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330-1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30	2020	허가과20160-(2020.4.7.)호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거 건물번호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505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평촌동촌길 13-3	2020	허가과20154-(2020.4.7.)호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거 건물번호 폐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공명리 104	충청남도 공주시 금봉길 49	2020	허가과21779-(2020.4.14.)호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거 건물번호 폐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77-15	충청남도 공주시 돌정길 50-8	2020	허가과21697-(2020.4.14.)호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거 건물번호 폐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21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머리길 42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20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머리길 50-5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136-1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길 228-79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1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257-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길 341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1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들목팽나물길 12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7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길 175-17	2020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공주시 고시 제2020-64호

도시계획시설(중로1-47호)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금흥동 62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1-47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5. 1.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금흥동 624번지 일원

나. 사업내용

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칭	사 업 내 용	비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금흥동(중로1-4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분할시행)	- 면적 : 344㎡ - 중로1-47호 L=7.7m, B=20.7~9.0m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충남 당진시 계성3길 59(읍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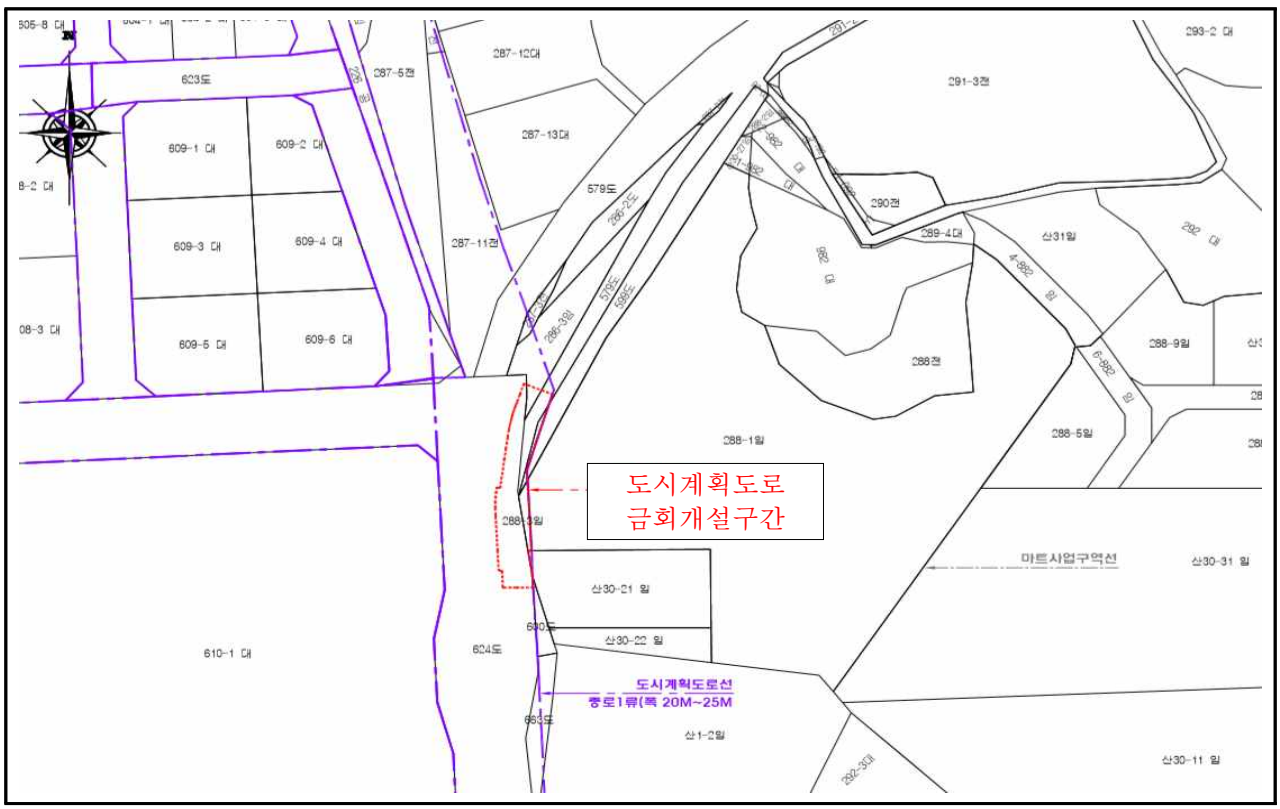
○ 성 명 : ㈜ 서우리테일 대표 박인

라. 사업기간 : 인가일(2020. 05. 01.) ~ 2021년 04월 30일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공주시 금흥동	624	도	6,772.3	235.0	공	공주시	
2		579	도	7,307.0	56.0	국	국토교통부	
3		599	도	469.0	15.0	국	국토교통부	
4		288-3	임	24.0	24.0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 35 (을지로1가)	
5		286-3	임	327.0	14.0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 35 (을지로1가)	
계				14,899.3	344.0			

바. 도시계획도로 도면



공주시 공고 제2020-66호

2020년도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

수도법 제38조 및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에 적용되는 『2020년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0년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내역 : 붙임참고**

❑ **적용범위**

- ❍ 급수구경 : D13㎜ ~ D50㎜
- ❍ 적용공사 :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개조·수선)
- ❍ 급수공사 시공은 공주시장(위탁사업)이 발주하며, 공사비는 수도 신청자가 부담해야한다.
- ❍ 관리 책임은 상수도 배수관부터 계량기 보호통(계량기 포함)까지는 시가, 보호통 이후 시설은 수도사용자에 있다.
- ❍ 상기 조항에 의거 급수신청자는 급수승인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계량기 보호통(계량기 포함)까지는 준공과 함께 시에 기부 된 것으로 본다.
- ❍ 본 정액제는 기 매설되어있는 상수도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계량기 보호통(계량기 포함) 설치까지 적용되며, 보호통 설치 후 가정인입 배관은 수도사용자가 별도 시행하여야 한다.

❑ **열람장소**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사무실

❑ **적용기간** : 2020.5.(고시일로 부터) ~ 다음 고시일 까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41-840-8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율적용:92%)

(단위 : 원)

공종별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비고
관급자재	수도미터기	신설용	34,200	45,100	61,600	89,200	138,000	181,400	
		교체용	31,000	38,000	56,000	77,300	117,600	149,400	
원인자부담금	읍·면 지역		130,000	220,000	440,000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신청,징수등에관한조례에의거별산			[별표1]
	동 지역		200,000	520,000	920,000				
수수료(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읍·면·동 지역		6,000	6,000	6,000	6,000	12,000	12,000	[별표4]
급수관분기 (1개소당)	PE관	20m/m	57,040	57,040					
		25m/m	61,640	63,480	62,100				
		32m/m	68,540	69,920	71,300	71,300			
		40m/m	70,840	72,220	73,600	75,440	73,600		
		50m/m	78,200	79,580	80,960	82,800	82,800	82,340	
본관연결 (1개소당)	PE관	80m/m	169,280	184,000	221,720	247,020	341,780		
		100m/m	178,020	192,740	230,460	255,760	359,260	414,000	
		150m/m	187,680	202,400	240,120	264,960	377,200	431,480	
		200m/m	231,840	246,560	287,040	312,340	433,780	488,520	
		250m/m	248,400	263,120	306,360	331,660	466,900	521,640	
		300m/m	270,020	284,740	331,200	356,500	493,580	547,860	
		350m/m	235,980	253,000	301,300	324,760	413,540	467,820	
		400m/m	319,700	330,740	376,280	395,600	453,100	489,900	
		450m/m	334,880	346,380	391,460	410,780	468,280	505,540	
직관부설(PE수도관) (1m당)(B=0.80m)	비포장	PE관	21,620	22,080	22,540	23,460	24,840	26,680	
	고압블럭	PE관	21,620	22,080	22,540	23,460	24,840	26,680	
	콘크리트포장	PE관	17,940	18,400	18,860	19,780	21,160	23,000	
	아스콘포장	PE관	16,560	17,020	17,940	18,860	19,780	21,620	
수도관 접합	나사조임식	PE관	18,400	20,700	28,980	33,580	36,340	44,620	
수도관 절단		PE관	2,210	2,210	2,210	2,210	2,210	2,210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1개소 당)		지열형	310,040	348,680	435,160	527,160	692,760	781,080	
수도계량기보호통 교체(1개소 당) (계량기 포함)		지열형	373,520	424,120	511,520	602,600	787,520	875,840	
수도계량기 설치 (1개소 당)			46,460	56,120	56,120	56,120	71,300	71,300	
수도계량기 교체 (1개소 당)			59,340	71,300	71,300	71,300	90,620	90,620	
지수밸브 설치 (1개소 당)		PE관	228,160	242,420	267,720	299,920	339,020	380,880	

소화전 설치공								
소화전 설치(본관 D75mm)	PE관	2,489,520						
소화전 설치(본관 D100mm)	PE관	2,204,780						
소화전 설치(본관 D150mm)	PE관	2,865,800						
소화전 교체(지상식, 쌍구형)	PE관	1,392,880						
소호전보호틀 설치	STS	266,800						
포장공(복구공)								
고압블럭 철거 및 포장(B=0.80m)	1m 당	16,100						
고압블럭 포장(복구)(B=0.80m)	1m 당	11,500						
콘크리트포장깨기(B=0.80m)	1m 당	29,900						
아스콘포장깨기(B=0.80m)	1m 당	19,320						
아스콘덧씌우기깨기(B=0.80m)	1m 당	34,960						
콘크리트포장(B=0.80m)	1m 당	100,280						
아스콘포장(B=0.80m)	1m 당	107,640						
아스콘덧씌우기(B=0.80m)	1m 당	108,100						
콘크리트포장깨기및포장 (B=0.80m)	1m 당	130,640						
아스콘포장깨기및포장 (B=0.80m)	1m 당	127,420						
아스콘덧씌우기및포장 (B=0.80m)	1m 당	143,520						
상수관로표시못 설치	1EA 당	23,460						

공주시 고시 제2020-69호

학봉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

농촌지역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학봉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학봉2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2리 일원

나. 면 적 : 846ha

다.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 : 도자전시관 신축, 부설주차장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 교육, 컨설팅, 제경비 등

4. 사업비소요액 : 470백만원 (국비 329, 도비 33, 시비 108)

5. 사업예정기간 : 2016년 ~ 2020년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7. 사 업 시 행 자 : 공주시장

8.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읍면	리				
도자전시관	반포면	학봉리	238	대	635	학봉2리 마을회
	소 계				635	

9.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 041-840-8248)

공주시 고시 제2020 - 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6, 3-49호외 3개)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3-46호, 소로3-49호외 3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61), 도로과(☎041-840-85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5. 1.

공 주 시 장

1. 사업내역

종류	명칭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면적 (필지/㎡)	사업내용	사업 기간	비고
도시계획 시설(도로) 사업	고상아리 소로3-46호, 3-49호	중학동 9-17번지외 34필지	35 / 1,315	L=172.5m B=6m	인가일(2020.05.01.)~ 20개월(2021.12.31.)	
	교대앞, 소로3-74	중학동 251-5번지 외 26필지	27 / 1,715.6	L=150m B=6m	인가일(2020.05.01.)~ 20개월(2021.12.31.)	
	옥룡동 대추골 중로3-2	옥룡동 438번지외 34필지	35 / 3,620	L=300m B=8~12m	인가일(2020.05.01.)~ 20개월(2021.12.31.)	
	검상동 솔브레인 중로3-17	검상동 730번지외 22필지	23 / 2,833.4	L=250m B=7.5m	인가일(2020.05.01.)~ 20개월(2021.12.31.)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로3-46호, 3-49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중학동	9-17	대	1,660.2	9.0	공	공주시	
2	"	9-74	대	16.2	16.2	공	공주시	
3	"	9-75	대	25.7	25.7	공	공주시	
4	"	9-73	대	7.0	7.0	공	공주시	
5	"	11-1	대	3.7	3.7	공	공주시	
6	"	12-3	대	0.9	0.9	공	공주시	
7	"	251-1	도	7,653.8	160.8	국	국토교통부	
8	"	71-5	대	10.2	10.2	공	공주시	
9	"	71-4	대	15.3	15.3	공	공주시	
10	"	71-3	대	21.0	21.0	공	공주시	
11	"	70-7	대	30.5	3.5	공	공주시	
12	"	14-1	대	10.4	6.6	공	공주시	
13	"	251-53	도	1,428.7	259.1	국	국토교통부	
14	"	3-44	대	9.2	8.5	김흥섭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동 167-49	
15	"	3-43	대	14.0	14.0	김흥섭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동 167-49	
16	"	10-1	대	30.7	30.7	정진경	산성동 16-5	
17	"	10	대	18.9	18.9	정진경	산성동 16-5	
18	"	3-42	대	0.3	0.3	공	공주시	
19	"	251-52	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20	"	12-4	도	2.2	2.2	공	공주시	
21	중학동	12-5	대	17.4	17.4	이정미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89-15(지산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2	“	12	대	71.7	71.7	이정미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89-15(지산동)	
23	“	12-1	대	24.4	20.2	공	공주시	
24	“	3-37	도	51.6	51.6	공	공주시	
25	“	13	대	128.1	128.1	공	공주시	
26	“	13-2	대	95.8	95.8	공	공주시	
27	“	3-41	대	1.1	1.1	공	공주시	
28	“	3-40	대	8.3	8.3	공	공주시	
29	“	14-3	대	15.5	15.5	공	공주시	
30	“	14-2	대	139.5	139.5	공	공주시	
31	“	3-39	대	5.9	5.9	송석건	충남 공주시 영명학당1길 19-14(중학동)	
32	“	3-36	도	0.6	0.6	공	공주시	
33	“	3-45	도	0.4	0.4	공	공주시	
34	“	3-46	도	3.0	3.0	공	공주시	
35	“	15-1	차	125.5	125.5	공	공주시	
합계				11,665.2	1.315.7			

<소로3-74>

1공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중학동	255	천	10,016.5	108.9	국	국토교통부	
2	“	251-5	도	1,571.8	431.6	국	국토교통부	
3	“	250-17	대	4.4	4.4	공	공주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4	“	250-19	대	3.2	3.2	공	공주시	
5	“	250-18	대	12.1	12.1	공	공주시	
6	“	250-20	대	69.7	69.7	공	공주시	
7	“	248-13	도	52.9	12.5	공	공주시	
8	“	248-8	대	117.7	117.7	홍인선	서울 광진구 면목로5길 42-8(군자동)	
9	“	248-23	대	37.7	37.7	공	공주시	
10	“	248-25	대	33.1	33.1	공	공주시	
11	중학동	248-12	대	113.7	113.7	이숙래	공주시 웅진동 산32-1 시영아파트 101-304	
12	“	248-24	대	53.6	53.6	공	공주시	
13	“	248-7	대	202.2	202.2	공	공주시	
14	“	248-22	대	48.4	48.4	공	공주시	
15	“	248-28	대	19.1	19.1	공	공주시	
16	“	248-26	대	57.7	57.7	공	공주시	
17	“	248-21	대	20.1	20.1	공	공주시	
18	“	248-4	대	93.3	93.3	박수길	중학동 240	
19	“	248-20	대	12.5	12.5	공	공주시	
20	“	246-23	대	6.6	6.6	공	공주시	
21	“	248-1	답	12.8	12.8	하응운	봉황동 47	
22	“	248-2	전	2.1	2.1	최규용	중학동 246-22	
23	“	248-18	전	16.8	4.9	공	공주시	
24	“	248-27	전	7.5	1.1	공	공주시	
합계				12,585.5	1,479.0			

공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금학동	357-1	전	15,777.0	174.4	국	국토교통부	
2	"	368	도	417.0	59.2	국	국토교통부	
3	"	270-32	답	3.0	3.0	공	공주시	
합계				16,197.0	236.6			

<중로3-2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공주시 옥룡동	434-12	구거	3209	521	국유지	국토교통부	
2		218-35	대지	6	6	공유지	공주시	
3		218-36	대지	7	7	공유지	공주시	
4		218-38	대지	59	59	공유지	공주시	
5		218-37	대지	84	84	공유지	공주시	
6		219-11	대지	3	3	공유지	공주시	
7		219-18	대지	6	6	공유지	공주시	
8		219-12	대지	94	94	공유지	공주시	
9		219-13	대지	105	105	공유지	공주시	
10		219-14	대지	23	23	이재훈	충청남도 공주시 대추골1길 59-1 (옥룡동)	
11		219-15	대지	127	127	공유지	공주시	
12		219-16	대지	10	10	김근숙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19-7	
13		219-17	대지	72	40	공유지	공주시	
14		438	도로	355	233	국유지	국토교통부	
15		155-5	전	13	13	공유지	공주시	
16		155-1	전	966	882	공유지	공주시	
17		155-6	전	16	16	공유지	공주시	
18		155-3	임야	2	2	공유지	공주시	
19		157-4	전	145	145	공유지	공주시	
20		157-3	전	108	108	공유지	공주시	
21		156-1	전	480	472	공유지	공주시	
22		158-2	전	330	1	공유지	공주시	
23		434-19		115	88	공유지	공주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임야					
24		154-6	답	29	11	공유지	공주시	
25		154-10	답	35	35	공유지	공주시	
26		154-1	답	396	222	공유지	공주시	
27		154-11	답	22	22	공유지	공주시	
28		154-12	답	1	1	공유지	공주시	
29		155-2	전	42	42	공유지	공주시	
30		436	도로	554	23	국유지	국토교통부	
31		141-1	전	23	23	공유지	공주시	
32		436-9	도로	11	11	국유지	국토교통부	
33		140-1	전	13	13	한정웅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715-7	
34		436-8	도로	78	78	국유지	국토교통부	
35		156-2	전	68	68	공유지	공주시	
36		436-10	도로	145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436-11	도로	147	5	국유지	국토교통부	
38		133-2	전	9	1	공유지	공주시	
합계				7,908	3,620			

<중로3-17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공주시 검상동	730	도로	25581.6	102	공유지	공주시	
2		726-9	공장용지	527.5	527.5	공유지	공주시	
3		216-1	답	693	693	공유지	공주시	
4		170-3	답	10	10	공유지	공주시	
5		170-5	답	132	96	공유지	공주시	
6		170-2	도로	13	4	공유지	공주시	
7		9999-7	임야	0	27	토지대장 없음		
8		228-2	전	11	11	공유지	공주시	
9		224-4	전	10	10	공유지	공주시	
10		708-1	구거	432	67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1		221-7	답	11	11	오상준 외 3인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441	
12		221-6	도로	155	155	공유지	공주시	
13		221-5	답	45	45	공유지	공주시	
14		707		4125	573	국유지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도로					
15		731	도로	188.9	188.9	공유지	공주시	
16		216-3	도로	29	29	공유지	공주시	
17		221-3	도로	56	56	공유지	공주시	
18		220-3	도로	11	11	공유지	공주시	
19		216-2	도로	26	26	공유지	공주시	
20		219-5	도로	16	16	공유지	공주시	
21		218-4	도로	45	45	공유지	공주시	
22		218-3	전	23	23	공유지	공주시	
23		169-1	임야	107	107	연안이씨안분재공파종중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519	
합계				32,248	2,833.4			